

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
신청인	기관명(법인명)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 성명		
	소재지		
	인터넷주소	전화번호	
신청사유			

「이산화탄소 포집·수송·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

신청인 제출 서류	「이산화탄소 포집·수송·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9조제1항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1. 사업자등록증명 2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담당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